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충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69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 박충권·박준태·최수진

김선교 · 김태호 · 조지연

고동진 • 이만희 • 김성원

김승수 • 이인선 • 신성범

김장겸 의원 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상속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각종 공제제도를 통하여 상속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음.

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%로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아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.

또한, 인적공제 제도 중 배우자에 대하여는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공제하여 주는 배우자 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,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는 부부가 함께 일구어낸 자산이라는 점과 부의 대물림이라는 수직이동이 아니라 수평이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부과를 폐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폐지하고, 상속

세 최고 세율도 50%에서 40%으로 10%p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(안 제 19조 및 제26조).

법률 제 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"를 "그 금액을"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.

제21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2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6조(상속세 세율)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"상속세산출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<과세표준>	<세 율>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1억원 초과 5억원 이하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
10억원 초과	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제1항 및 제2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19조(배우자 상속공제) ① ----제19조(배우자 상속공제) ① 거주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 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 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------- 금액을-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 1.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<삭 제> 한도금액 한도금액 = (A - B + C) × D - E A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: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 을 받은 재산의 가액 C: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: 「민법」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 속분(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) E: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 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<삭 제> 2. 30억원 ② ~ ④ (생 략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21조(일괄공제) ① (생 략) 제21조(일괄공제) ① (현행과 같 유)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 〈삭 제〉 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

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.

제26조(상속세 세율) 상속세는 제 제26조(상속세 세율) 상속세는 제 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 계산한 금액(이하 "상속세산출 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<과세 표준	<세 율>
>	\ "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 \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1억원 초과	1천만원 + (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5억원 이하	
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	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
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	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
30억원 초과	10억4천만원 + (3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)

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 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"상속세산출 세액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<과세 표준	<세 율>
>	. ,
1억원 이하	과세표준의 100분의 10
1억원 초과	1천만원 + (1억원을
5억원 이하	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)
5억원 초과 10억원	9천만원 + (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)
이하 10억원 초과	2억4천만원 + (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)